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0년 11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 박병찬 팀장, 김도헌 사무관(02-2110-5327)	

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 한층 쉬워져

- 지경부, 통제기술 확인지표 개발·보급 -

□ **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**는 **전략물자관리원(원장 조성균)**과 공동으로 약 8개월에 걸쳐 **「기술확인 지표(Parameter Sheet)」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완료**하였음

○ 품목의 경우 HSK와 수출통제 품목을 연계한 자가판정* 도구가 있으나, **기술의 경우** 그간 수출통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 상의 **모든 기술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**하였으며,

*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;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)와 수출통제번호를 연계하여, 민원인은 www.yestrade.go.kr에 접속한 후 취급품목의 HSK를 입력하면 관련 통제품목이 검색되고 이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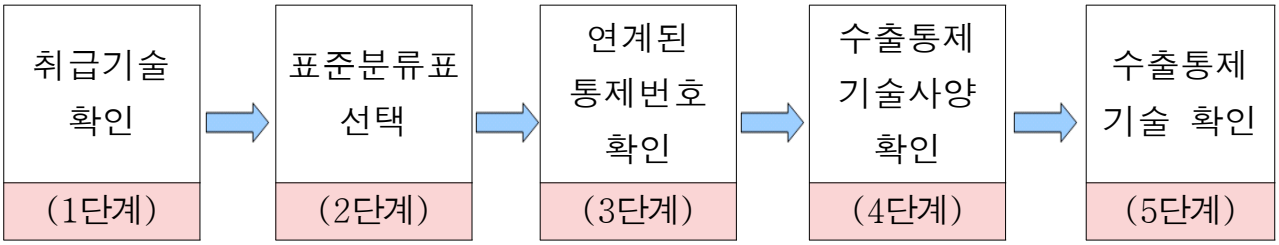
○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략기술관리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**해당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과제**로서, 이를 위한 **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**되었음

□ 이번에 개발된 기술확인 지표는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**3개의 표준기술분류표*와 수출통제기술을 상호 연계**시켜, 익숙한 자료로부터 수출통제기술까지 안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, 사용자 편의를 위해 **키워드 방식을 추가**하였음

* 표준분류표: ①과학기술연구분야분류표, ②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, ③산업기술분류표

○ 이에 각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는 **가장 익숙한 분류체계를 선택, 각 기관이 취급하는 기술이 수출통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** 할 수 있게 됨

< 참고 : 통제기술 확인지표 흐름도 >



□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개발된 **수출통제기술 확인지표를 기술을 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**하는 한편,

○ 추후 **단계적으로 발전**시켜 수출통제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자료로 개선함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(www.yestrade.go.kr)에 **민원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방안도 강구**할 계획임

참고 **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**

1.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

○ 「**전략물자**」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·기술·S/W

○ 「**전략물자 수출통제**」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**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**

*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해 WMD 확산 방지

<국제수출통제체제>

핵무기	생·화학무기	미사일	재래식무기
NSG[1]	AG[2]	MTCR[3]	WA[4]
45개 회원국	41개 회원국	34개 회원국	40개 회원국

*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원칙과 통제품목을 정하고, 회원국은 자국의 법에 반영하여 통제(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)

2.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

○ 9. 11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**국제안보의 핵심현안**으로 대두

○ **UN안보리 결의 1540호**('04.4)를 통해 전략물자 **수출통제제도**는 **국제 규범화**되었고,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

○ 수출통제 위반기업은 **거래부적격자(DL)[5]**에 등재되어 **무역제한, 대외이미지 실추** 등 기업의 **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**

* 위반자 처벌 : (국제)3년간 무역제한, (미국)최고 25년간 무역금지

1) 핵공급국그룹 : Nuclear Suppliers Group(NSG),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2) 호주그룹 : Australia Group(AG),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3) 미사일기술통제체제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(MTCR), 미사일 관련 통제
4) 바세나르체제 : Wassenaar Arrangement(WA),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5) 거래부적격자 명단 : Denial List(DL)

3.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

□ 개　요

○ ‘89년 **대외무역법**시행령에 도입, **’03년 Catch-All** 제도 시행

* 국제체제 가입 : NSG(‘95), AG(’96), WA(‘96), MTCR(’01)

○ ‘05.2월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(Yestrade) 개통,** ‘07.6월 전략물자 관리 지원 전문기관인 '**전략물자관리원' 설립**

* 전략물자 판정, 시스템 운영,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지원

□ **우리나라 제도 주요내용**

○ **(전략물자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및 기술 등**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

○ **(판정)**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**(자가판정)**하거나,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**(사전판정)**

○ **(수출허가)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받아 수출

* (지경부) 이중용도 품목, 일반방산물자, (교과부) 원자력전용품목, (방사청) 군용물자

○ **(상황허가) 非전략물자**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

○ **(자율준수)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,** 허가면제 등 혜택 부여

○ **(벌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**3년 이내 무역제한**

□ **수출통제 운영 현황**

○ 우리나라는 최근 시스템 구축, 제도개선 등 **모범이행 국가로 인식**되도록 하는데 **최선의 노력 경주**

* 미국은 우리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관계국에 홍보

○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이행 지원으로 **기업의 수출통제 인지도는 78.2%(‘08)에서 83.5%(’09)로 향상**